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8404 발의연월일: 2025. 2. 25.

발 의 자: 한준호·박상혁·이용우

정성호 · 김영환 · 김용민

이건태 • 이소영 • 김성회

김동아 • 전현희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만 부여하고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 위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대통령령에서는 100만제곱미터(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미만의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권한위임은 수임기관의 유사권한과 책임 등을 감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해제권한을 비수도권에만 위 임하여 수도권에 대하여는 역차별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 고 있음.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위임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 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 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협의 의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100만제곱미터(수도권은 30만제곱미터 이하) 미만의 면적에 대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시·도지사의 권한임에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으며,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수도권 또는 비수도권과 관계없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 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 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권한과 능력에 부합하는 책임행정을 유도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제4조제1항·제4항, 제5조제3항, 제8조, 제9조 및 제29조제3항 삭제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그 해제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제4조제1항 단서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제3조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제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로, "국토교통부장관이"를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시·도지사가"로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단서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를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 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중앙행정기관의 장(시·도지사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하면, 같은 조 제6항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9조 전단 중 "국토교통부장관은"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29조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등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 제4조 제4항,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8조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제3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 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 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시의 개 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거나 국 방부장관의 요청으로 보안상 도시의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개발제한구역 의 지정 및 해제를 도시・군관 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단서 신설> 다만,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미만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 려는 경우에는 특별시장 · 광역 시장 ·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 지사"라 한다)가 그 해제를 도 시 · 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제4조(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입

안) 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 · 군관리 계획(이하 "도시·군관리계획" 이라 한다)은 해당 도시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자치시장 · 특별자치도지 사・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입안권자"라 한다)가 입안(立案)한다. 다만, 국가계획 과 관련된 경우에는 국토교통 부장관이 직접 도시 · 군관리계 획을 입안하거나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따라 관 할 특별시장 · 광역시장 · 특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 다), 시장 및 군수의 의견을 들 은 후 도시・군관리계획을 입 안할 수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된 경우에는 도지사가 직 접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 거나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요청에 따라 관할 시장이나 군 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시 · 군

안) ①
,,
<u>\lambda</u>
_ ' 도지사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 ②·③ (생 략)
- ④ 입안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 · 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에는 개발제한구역 중 해 제하고자 하는 지역(이하 "해 제대상지역"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계획 등 구체적인 활용방 안과 해제지역이 아닌 지역으 로서 개발제한구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훼 손된 지역(이하 "훼손지"라 한 다)의 복구계획 등 주변 개발 제한구역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복구 하고자 하는 훼손지의 범위는 해제대상지역 면적[바다・하천 ・도랑・제방(堤防) 및 도로 등 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의 면 적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10 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 는 범위 안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

②・③ (현행과 같음)
4

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 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1. ~ 3. (생략)
- ⑤ ~ ⑦ (생 략)
-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재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②
 (생 략)
 - ③ 도시용지의 적절한 공급, 기 반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사유로 개발제한구 역에서 해제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그 다음 날에 개발제한 구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 1. 개발제한구역의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고 시된 날부터 4년이 되는 날까 지 관련 개발사업이 착공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재난의 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제3조제	<u>]]</u>
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해져	<u>] </u>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	<u>3</u>
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	囙
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
<u>제3조제1항에 따라</u> =	<u>구</u>
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서	<u>}</u>
<u>7}</u>	_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해제된 개발제한구역의 フ	H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②	2)
지정 능에 관한 특례) ①·(2 (현행과 같음)	2)
	2)
(현행과 같음)	<u>-</u>
(현행과 같음)	- -
(현행과 같음)	_ _ _ _
(현행과 같음)	_ _ _ _
(현행과 같음)	_ _ _ _ _
(현행과 같음)	_ _ _ _ _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2)

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개발 사업의 착공이 지연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환원을 추가로 유예할 수 있다.

2. (생략)

④・⑤ (생략)

제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제 ① 도시·군관리계획은 <u>국토교</u> 통부장관이 결정한다.

② <u>국토교통부장관은</u>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관계 <u>중앙행정기관의 장</u>과 미 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 다.

-제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
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2. (현행과 같음)
④·⑤ (현행과 같음)
]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8조(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① <u>제3조제</u>
① <u>제3조제</u>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
①제3조제
① <u>제3조제</u>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가
 ①제3조제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가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①제3조제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가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① <u>제3조제</u>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가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u>중앙행</u>
 ①제3조제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가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
 ①제3조제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가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①제3조제 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 는 시・도지사가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는중앙행 정기관의 장(시・도지사가 결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 관의 장을 말한다)

- ③ <u>국토교통부장관은</u>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 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방을 위하여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국방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만해당한다)에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생략)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면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 고 관계 서류를 일반인에게 공 람시켜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 통부장관은 자신이 결정한 도 시・군관리계획에 대하여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 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는
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는
<u>.</u>
⑤ (현행과 같음)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는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보 내어 이를 일반인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⑦ (생략)

제9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u>국토교통부</u> <u>장관은</u> 제8조제6항에 따라 도 시・군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하 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해당 도시지역 의 토지에 관하여 지적(地籍)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관리 계획 사항을 명시한 도면(이하 "지형도면"이라 한다)을 작성하 여 함께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작성・고시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제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② (생 략)

③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사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를 처리하는

	⑦ (현행과 같음)
제	9조(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 <u>국토교통부</u>
	<u>장관 또는 시·도지사는</u>
제	2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② (현행과 같음)
	<u><삭 제></u>

경우에는 공익성, 환경훼손 가능성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필요성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열의 의견에 따라야한다.

④·⑤ (현행과 같음)